

【소방법령Ⅲ】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제조소에서 제2류 위험물 적린 2,500 kg을 취급하던 중 10일의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제시된 조건만 적용함)

[과징금 산정기준 조건]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 배수)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단위: 원)
- 제시된 취급량은 허가수량과 동일
-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는 해당 없음
-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위반행위

- ① 300,000원
- ② 1,000,000원
- ③ 4,000,000원
- ④ 6,000,000원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를 적용 받은 옥내저장소에 하나의 위험물만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를 2 m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저장 창고의 처마높이는 6 m 미만이고, 보유공지는 최소기준을 적용함)

- ① 과염소산염류 1,000 kg
- ② 무기과산화물 1,100 kg
- ③ 브로민산염류 3,300 kg
- ④ 질산염류 2,500 kg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밸브없는 통기관에 관한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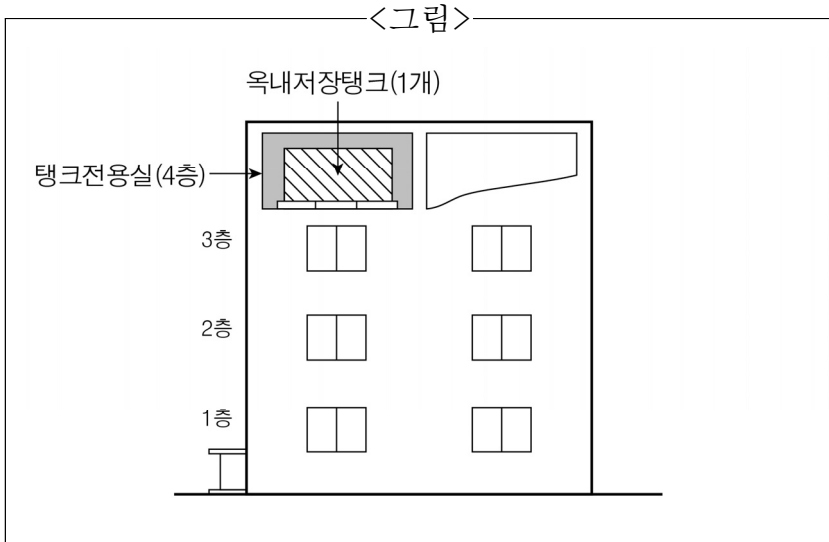
- ① 지하탱크저장소의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한다.
- ② 옥외탱크저장소에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③ 간이탱크저장소의 통기관은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옥내탱크저장소의 통기관 끝부분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 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 m 이상 거리를 둔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황을 용기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서는 황을 경계표시 높이 이하로 저장하여야 한다.
- 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 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두어야 한다.
- ④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속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소방법령Ⅲ】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라 <그림>의 옥내저장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과 최대용량으로 옳은 것은?



- ①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5,000 L
 ②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20,000 L
 ③ 제4류 제4석유류 60,000 L
 ④ 제6류 질산 3,000 kg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판매취급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②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할 것
 ③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안쪽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미만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한다.
 ③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대로 한다.
 ④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보수하는 경우
 ②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철거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200 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20 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한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는 경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저장소는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 m 이내의 거리에 있음)

<보기>

- ㉠ 지하탱크저장소
 ㉡ 간이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3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 ① ㉠, ㉡
 ② ㉢, ㉣
 ③ ㉠, ㉡, ㉢
 ④ ㉠, ㉡, ㉢, ㉣

【 소방법령Ⅲ 】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 ③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 ④ 위험물은 위험물 운반용기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적재방법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감독 및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라 한다)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배 미만의 것(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하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라 한다)

- ① 138
- ② 140
- ③ 168
- ④ 170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용어를 바르게 정의한 것은?

- ①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방염물품을 포함한다.
- ②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무창층 제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100분의 3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 ④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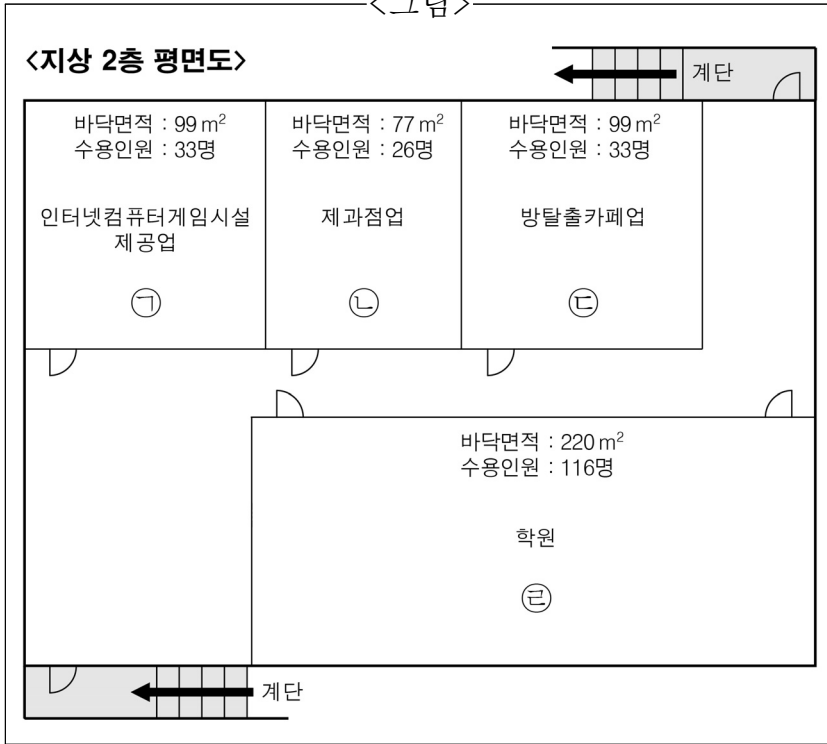
【소방법령Ⅲ】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림>의 ㉠~㉣ 중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조건>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25년 11월 1일임
- 각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은 없음
- 각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지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만 적용함

<그림>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해당 연도에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이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그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수시 교육 대상에 해당한다.
- ③ 보수 교육대상자는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안전시설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피난안내도
- ② 누전차단기
- ③ 다수인 피난장비
- ④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창문은 고시원 층별로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것으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 ②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은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방화담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③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 또는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는 방식으로 할 것
- ④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 소방법령Ⅲ 】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 따른 영상음향차단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 ②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③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 [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①	8	10분의 3	10분의 5
②	8	10분의 5	10분의 3
③	10	10분의 3	10분의 5
④	10	10분의 5	10분의 3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안전시설등의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점검주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여야 하기에 정기점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기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에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법령Ⅲ】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사람이 사망한 사고
- ②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고
- ④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우수업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소가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 중에는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 금액이 다른 것은?

- 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②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③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 ④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경우